5 학생생활상담소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명칭) 본 상담소는 호서대학교 학생생활상담소(이하 "상담소"라 한다.)라 칭한다.

제2조(목적) 본 상담소는 학생들의 생활 전반에 걸친 제반문제의 지도, 상담 및 연구와 학생, 직원, 교원(시간강사 포함)이 관련된 성 관련 고충 상담 및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10. 9. 15)

제3조(활동부서) 본 상담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담부, 연구부 및 성 평등 상 담부를 둔다. (개정 2010. 9. 15)

- 1. 상담부 : 개인상담 및 집단지도와 이에 필요한 각종 검사를 실시한다.
- 2. 연구부 : 학생지도, 상담을 위한 연구활동을 하며 이에 관련된 연구결과를 간행 한다.
- 3. 성 평등 상담부 : 성희롱 등 예방 및 처리 규정에 따른 업무를 담당한다. (신설 2010. 9. 15)

제3조의 2(운영위원회) 상담소 운영 및 상담활동 자문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 (신설 2010. 9. 15)

- 1. 위원장은 상담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운영위원은 소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한다.
- 2. 운영위원은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단, 연임할 수 있다.
- 3.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 2 장 구 성

제4조(소장 및 직원) 본 상담소는 다음과 같이 소장 및 직원을 둔다.

- 1. 소 장 : 1명
- 2. 카운셀러 : 약간명
- 3. 연 구 원 : 약간명
- 4. 조 교 : 약간명
- 5. 사 무 원 : 약간명
- 6. 성 고충 상담원 : 약간명 (신설 2010. 9. 15)

제5조(자격 및 임무) 소장 및 직원의 자격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.

- 1. 소 장
 - 가. 소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상담소 업무 전반을 통괄한다.

- 나. 소장은 본 대학 조교수 이상으로 보하며 총장이 이를 임명한다.
- 다.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단. 연임할 수 있다.
- 2. 카운셀러
 - 가. 카운셀러는 학생의 제반 상담에 응한다.
 - 나. 카운셀러는 대학원 석사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위촉한다. (개정 2010. 9. 15)
- 3. 연 구 원
 - 가. 연구원은 학생지도 상담을 위한 제반 연구활동에 종사한다.
 - 나. 연구원은 대학원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임명한다.
- 4. 조 교
 - 가. 조교는 학생지도 상담 및 제반 연구활동을 보조한다.
 - 나. 조교는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이를 임명한다.
- 5. 사 무 원
 - 가. 사무원은 상담소 업무 전반에 따른 실무에 종사한다.
 - 나. 사무원은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로서 총장이 임명한다.
- 6. 성 고충 상담원 (신설 2010. 9. 15)
 - 가. 성 고충 상담원은 성 희롱 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9조와 제10조에 명시된 업무를 담당한다.
 - 나. 성 고충 상담원은 대학원 이상의 학력소지자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임명한다.

제 3 장 재 정

제6조(재정) 본 상담소의 재정은 다음으로 충당한다.

- 1. 본 대학교 보조금
- 2. 자율적 경비
- 3. 사회유지의 찬조금
- 4. 기타 수입

제7조(회계연도) 본 상담소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 회계연도와 같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8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0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.